

보도자료
12.21(월) 조간부터 보도 가능

작성부서	(금융위원회) 투자금융연계팀 (기획재정부) 복지경제과, 소득세제과 (보건복지부) 국민연금재정과 (고용노동부) 퇴직연금복지과		
책임자	박주영 팀장(02-2156-9790)	담당자	최성규 사무관(02-2156-9694)
	유병희 과장(044-215-4970)		신대원 사무관(044-215-4971)
	이용주 과장(044-215-4210)		정윤홍 사무관(044-215-4213)
	최홍석 과장(044-202-3650)		백진주 사무관(044-202-3652)
	손필훈 과장(044-202-7554)		이강연 사무관(044-202-7557)
배포일	'15.12.18(금)	배포부서	대변인실(2156-9543~48) 총 6매

제 목 : 연금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국민들의 노후재산을 안정적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.

- 관계부처 합동, 「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」 마련 발표

- ① 개인연금과 IRP(개인형 퇴직연금) 간 계좌이전, 「개인연금활성화법」 및 개인연금계좌 도입
⇒ 개인연금 자산의 관리 효율성 제고 및 가입자 보호 강화
- ② 다양한 자산운용 방식(대표 포트폴리오, 자동투자옵션) 및 수령방식 도입 검토
⇒ 퇴직연금 운용방식 개선
- ③ 다양한 위탁운용 개발 및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투자 참여확대
⇒ 국민연금과 금융시장의 동반성장 도모

1. 추진 배경

-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노후준비는 미흡
- (인구구성 변화) 낮은 출산율과 수명증가* 등으로 사회적 부담**이 급격하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
 - * 노령화지수(65세 이상 인구 / 14세 이하 인구) 전망('15년→'60년, '15.7월 통계청) : (한) 94.2 → 393.1 (일) 204.7 → 288.3 (미) 75.8 → 123.8 (독) 165.9 → 249.6
 - ** 노년부양비(65세 이상 인구 / 15~64세 인구) 전망('15년→'60년, '15.7월 통계청) : (한) 17.9 → 80.7 (일) 43.5 → 73.2 (미) 22.3 → 37.6 (독) 32.6 → 61.9

- (자산구성) 가계저축률이 낮고* 개인자산이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 위주로 구성** 되어 노후에 필요한 생계자금을 축적하는데 한계

* 가계순저축률(% , '12년, 통계청) : (한) 3.8 (미) 5.8 (불) 11.7 (독) 10.3 (호) 10.5
** 가계자산 중 금융자산비중(% , '12년, 통계청) : (한) 24.9 (미) 68.5 (일) 59.1 (호) 38.7

- (수익률) 저금리 기조가 지속*되는 상황에서 예·적금, 채권 등의 보수적인 자산운용만으로는 충분한 노후소득 확보가 곤란

* 은행 정기예금 금리(만기 1년~2년 미만, %) : ('07말) 5.69 → ('11말) 4.07 → ('15.3Q) 1.62

⇒ 연금자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개인·퇴직·국민연금을 조화롭게 발전시켜 국민의 든든한 노후안전판을 확보

※ 금융개혁회의(6.18, 7.16, 12.10), 경제관계장관회의(10.27) 등을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방안을 마련

2.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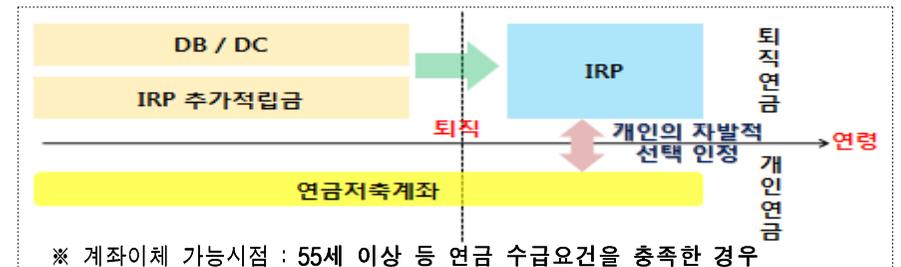
1 개인연금의 관리체계 개편

- ① 퇴직·개인연금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통합적인 자산운용 도모

- 개인이 퇴직한 경우에 IRP(개인형 퇴직연금)과 개인연금간 이체시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등 기존 세제혜택 유지

* (예) 55세 이상 등 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

<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간 과세이연>



⇒ 통합적·효율적인 자산운용을 유도하고, 수익률 제고 도모

② 원리금 보장 연금신탁 축소 유도

- 원리금 보장 상품위주의 판매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원리금 보장 신탁*의 신규가입을 제한하여 축소 유도

* 신탁업자는 원칙적으로 수탁한 재산에 대한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이 불가

⇒ 연금자산에 수익형 상품 편입*을 확대하여 운용 다변화 도모

* '15.9월말 기준 세제적격연금 중 원리금보장상품 비중 : 약 90%

③ 대표상품 제도 도입 추진

- 개인연금에 개인의 경제상황, 투자성향, 연령 등을 감안한 대표 모델 포트폴리오 및 자동투자 옵션(Default option) 도입 추진

⇒ 개인이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연금상품에 대한 수익률 및 접근성 제고

④ 중요사항 공시 및 정보제공 등 정비

- 장기상품의 특성을 감안하여 실질 수익률, 수수료 등의 비교공시 내용 및 주기(예 : 20년, 30년)를 정비하고 정보제공 의무를 부여

⇒ 연금사업자간 자율적인 시장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수익률 및 서비스 개선 도모

⑤ 수수료, 보수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 마련

- 업권별로 상이한 수수료·보수체계를 통일적으로 정비하고, 장기 유지자에 대한 인센티브(예 : 수수료 할인 등) 제공 방안 모색

⇒ 금융소비자의 연금상품 선택에 대한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고, 장기간 유지에 따른 연금화를 유도

⑥ 「개인연금활성화법」 제정을 통한 종합적 규율체계 구축

- ① 개인연금의 가입·축적·운용 및 수령 등 전 단계를 포괄하는 별도의 연금가입자 보호체계를 마련

- 연금사업자(은행, 보험, 증권사 등)의 등록요건, 소비자 보호사항* 등을 규정

* (예) 금융소비자의 Needs에 부합하는 다양한 상품구성 및 판매원칙, 적극적인 설명의무, 지급방식(적립금의 일정액 이상은 연금유지 강제)등을 종합적으로 규율

- 금융업권별 수수료, 공시, 자산운용 규제 등을 통일적으로 정비

⇒ 가입·운용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수령이 필요한 연금 상품의 특성에 맞는 규율체계를 마련

- 복잡한 연금상품을 소비자가 편리하게 비교·선택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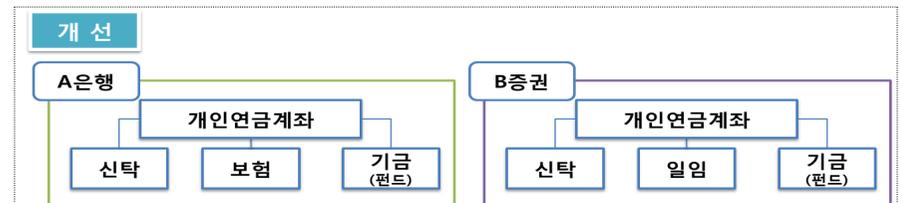
- ② 투자일임형 및 연금자산운용만을 목적으로 한 대표기금(기금형) 등 다양한 연금계약 형태를 도입하고, 대표상품 제도를 정착

⇒ 자산운용에 대한 전문성 등이 부족한 개인의 효율적인 연금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·조정을 지원

- ③ 개인연금활성화법에 따라 개인연금을 납입·운용·수령하는 기본 계좌인 “개인연금계좌”를 도입

⇒ 개인연금계좌를 통해 해당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모든 연금 상품에 가입하고 연금자산의 포트폴리오, 수익률 및 비용, 예상연금수령액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

<개인연금계좌 운영방안(예시)>



⇒ 개인연금계좌는 개인이 가입한 연금사업자(은행, 보험, 증권 등)의 개별 금융상품을 종합적으로 가입·운용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 제공 가능

2 퇴직연금의 운용방식 개선

1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다양화

- 대표 포트폴리오, 자동투자옵션(Default option) 도입 및 자산운용 방식의 단계적 합리화 검토 (TF 구성·운영)

⇒ 퇴직연금자산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경쟁력 있는 운용상품이 출시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

2 다양한 연금수령방식 도입

- 중도인출 방식 전환(사유 → 한도) 등 IRP 제도를 개선하고, 연금 지급 구조를 다양화*하는 방안 추진

* (예) 유족연금, 체감·체증형 연금, 계좌인출방식(은퇴 후 연금급여를 정기적으로 인출 하되 잔여적립금도 운용 가능한 방식) 등

⇒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급여를 일시에 수령하는 대신 IRP계좌를 통한 연금수령을 유도

3 국민연금 운영의 금융산업 연계 강화

1 신규 자산군 개발 등을 통한 투자 다변화

- 전통적인 투자방식에서 벗어나 해외·대체자산 및 혁신·전략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신규 자산군 개발 및 투자 다변화 도모

⇒ 성장가능성이 높은 투자대상을 발굴하는 등 투자대상을 다변화함으로써 연기금의 수익률 제고 및 위험분산

2 국내 금융산업과의 협력 강화

- 운용성과가 우수한 위탁 금융회사에 적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, 다양한 위탁유형 개발 및 위탁확대 등 추진
- 운용능력이 우수한 국내 금융사의 해외투자 참여기회를 확대하고, 국내 은행 및 보험사 등과 공동 프로젝트 등을 발굴
- 공적연금과 금융권 등이 참여하는 협의채널 구성·운영

⇒ 효율적인 적립금 운용 및 금융시장·산업과의 동반성장 도모

※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
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http://www.fsc.go.kr>

